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1337
-----------	------

2013년 7월 3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5월 8일, 채재선 의원 외 17명 발의
- 나. 회부일자 : 2013년 5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13년 7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채재선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정기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연수기관이 제한되어 있어 운수종사자가 교육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실습교육 없이 이론교육 및 안내교육 등 형식적인 교육 시행 등으로 인해 미이수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기교육을 공인된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교육 미이수자를 방지하고 정기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3.5.14~2013.5.22
- 제출의견
 -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교육내용은 교통안전공단 등 타 기관의 교육내용 및 목표와 상이하고, 동 조례에 따라 현재 3개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등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 설립된 연수기관의 설립 취지와 배치됨

- 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

- 운수종사자 정기교육은 교통안전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양교육이며, 동 조례 등에 따라 지정된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이 3곳이 있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원안 동의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영배)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시장이 운수종사자¹⁾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교통연수원 및 한국농촌문화연구회의 새마을교육원²⁾ 외에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³⁾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기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⁴⁾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⁵⁾은 운수종사자에 대해 면허 취득에 따른 신규교육과 시장의 필요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⁶⁾,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사항 : 운수종사자의 교육 현황 및 근거 법령

구분		교육내용	교육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마을· 시내버스 전세· 공항버스 특수여객버스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	교통연수원 시내버스조합 ⁷⁾
	법인택시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	교통연수원
	개인택시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	교통문화교육원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자격증 발부시 교육)	교통안전공단
		정기교육	교통연수원/교통문화교육원

1) 동 조례 제2조제1호의 정의 참고
 2) 동 조례 제4조제1항 및 별표 참고
 3)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경북 상주 소재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6) 이외에도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강화교육 및 친절서비스교육을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음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시내버스 조합에서 8시간의 정기교육을 시키고 있음

- 서울시장이 지정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인 교통문화교육원 및 교통연수원은 운송수단 특성에 맞는 신규교육(16시간) 및 정기교육(4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일정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 운수종사자의 운행스케줄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주요 사업구역이 서울로 되어 있는 택시 및 시내·마을버스 등과 달리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교통연수원에서만 받도록 되어 있는 정기교육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기관 다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음

실제로 교통연수원이 제출한 2013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에 따르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정기교육 일정은 7월과 8월에 5차례만 계획되어 있어(필요시 연말에 추가 교육 실시) 전국을 사업단위로 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시장은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운수종사자 교육을 다양화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고, 교육의 실효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안동의 의견을 제출하였고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인 교통문화교육원과 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교육내용은 교통안전공단 등 타 기관의 교육내용 및 목표와 상이하고, 동 조례에 따라 현재 3개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등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 설립된 연수기관의 설립 취지와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8) 택시물류과-18146(2013.6.26)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연수기관은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단, 『교통안전법』 제56조의2에 따른 교육은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p> <p>① 연수기관은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p> <p>① ----- ----- ----- ----- -----</p> <p>---.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단, 『교통안전법』 제56조의2에 따른 교육은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